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 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시행(2021.1.1.)에 따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이 아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자치구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 구 조례를 제정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산업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교육실시 의무 관련 사항, 교육 내용, 연 교육 시간, 교육 통지 등 규정 마련
- 교육강사, 교육위탁, 교육실시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4조~5조, 제11조)

- 라.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시기 및 장소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8조)
- 마. 교육 이수자 관리 및 교육 미이수자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제12조)
- 바. 교육의 유예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0월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문화관광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문화관광과, 전화 : 02-3396-4604, 팩스 : 02-3396-8627, email : ljhuii@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호

서울특별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 ②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

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한 강사에게 강사료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 대상자 및 예상 참석인원
2. 교육 일시 및 장소
3. 교육 내용 및 방법
4.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선정에 관한 사항
6. 교육 비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의 시기)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의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경우에는 월별 또는 분기

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교육의 장소) ① 교육을 실시할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장소의 대여를 요청하였을 때 중구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등의 적절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 명부, 교육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비치하여 3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의 유예)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재난의 피해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3. 그밖의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① 수탁기관이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14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의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교육결과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12조(교육미이수자 조치) 구청장은 교육대상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교 육 수 료 증

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교육일시: : ~ : (시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노래연습장업자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직인

[별지 제2호서식]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이수자 명부

210mm×297mm[백상지(80g/m²)]